



제 3 5 3 회 임 시 회
제 1 차 건설소방위원회
2025. 3. 11.(화)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의안번호	917
제안일자	2025.2.27.
회부일자	2025.2.28.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

(허 복 의원 대표발의)

##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허 복·한창화·남진복·이우청·김진엽·김창기·남영숙·  
윤승오·황명강·손희권·노성환·김용현·박순범·최덕규  
의원 (14명)

### 2. 제안이유

-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도내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 및 관리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소방 역사문화 보존과 소방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소방유물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사료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소방유물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소방유물 수집 금지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4. 관련법령

- 「소방기본법」 제5조

## 5.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 검토완료(예산입법담당관)
- 규제심사 :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민자활성화과)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감사관)
- 해당부서 검토의견 : 검토완료(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예산관련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예산입법담당관)

## 6. 입법예고 결과

- 예고방법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
- 예고기간 : 2025. 3. 4.~ 3. 1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31호)
- 의견제출 : 의견 없음

## 7. 검토의견

### 가. 조례제정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도내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 및 관리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소방 역사문화 보존과 소방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경상북도 소재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함.
-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것으로 “소방유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유물”이란 소방과 관련된 문헌, 서적, 의복, 사진 및 음향자료 등 소방 역사 문화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 ‘안 제3조’는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연구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는 ‘경상북도 소방 역사 사료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는 △소방유물의 수집·관리·전시·연구·조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사료관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안 제6조’의 1항은 도지사는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유물을 구입하거나 기증받을 수 있도록 하고, 2항은 소방유물을 기증·기탁 받고자 할 때에는 기증증서 또는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3항은 소방유물을 기증·기탁 하거나 발굴 등에 뚜렷이 이바지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는 수집 금지 유물을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는 유물로 판단될 경우,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유물로 판단될 경우, △소방 관련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로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는 소방유물 보존·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음.

#### 다. 종합의견

- 금번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은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도내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 및 관리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소방 역사문화 보존과 소방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본 제정 조례안은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 제정 후 소관부서에서는 안제5조에 따른 사료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제6조에 따른 소방유물을 취득할 경우 안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 금지 유물이 취득되지 않도록 하며,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료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참고 1

## 시·도별 조례 현황

소방본부

시·도	조례명	제·개정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제정 2024. 1. 10. 개정 2024. 5. 16.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2021. 9. 30. 개정 2024. 9. 20.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		

## 관계법령 발췌

### □ 소방기본법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